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3. 17 선고 2020가단2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2. 17

판결 선고 2021. 3.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체결된 2019. 8. 2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위 D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9. 8. 26. 접수 제16883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06. 3. 8. 자로 300만 원을, 2006. 3. 31. 자로 1,000만 원을, 2008. 4. 21. 자"로 500만 원을, 2016. 11. 23. 자로 1,600만 원을, 2017. 1. 12. 자로 3,500만 원을, 2019. 3. 21. 자로 6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나. D은 2019. 8. 23. 그 차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9. 8. 26. 접수 제16883호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위 부동산 매도 당시에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체결된 2019. 8. 23. 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D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9. 8. 26. 접수 제168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2019. 8. 27., 같은 달 31.경 두 차례에 걸쳐 D의 통장에 입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의 통장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D의 차녀인 점, ②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한도추가 약정서,대출금기한연기신청서 등을 대필한 사람은 D의 장녀 E, 그 남편 F이었던 점,③ D은 2019. 9. 28.경 사망하였는바,위 부동산을 매도한 2019. 8. 23.경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E, F 역시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고,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주완

별지